

# 주민세 「균등할」 「소득할」 이란 ?

주민세는 전년 1년간 (1월~12월)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주소지에서 과세됩니다. 세액은 「균등할」 과 「소득할」의 합계액입니다.

## 「균등할」 이란 ?

「균등할」이란, 넓고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금액은 일률적인 세금 (후쿠오카시는 5,500엔)

## 「소득할」 이란 ?

「소득할」이란, 전년 1년간 (1월~12월)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금

### ◆ 『주민세 「균등할」 이 비과세』란 ?

주민세 「균등할」 과 「소득할」 모두가 과세되지 않는 (비과세) 것을 말합니다.

「균등할」 이 비과세인 때는 「소득할」 도 비과세가 됩니다.

### ◆ 『주민세 「균등할만」 이 과세』란 ?

주민세 「균등할」 이 과세되어 있고, 「소득할」 이 과세되지 않은 (비과세) 것을 말합니다.

### ◆ 『주민세 「소득할」 이 과세 되는 것』이란 ?

주민세 「균등할」 과 「소득할」 모두가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.

「소득할」 이 과세된 때는, 「균등할」 도 과세됩니다.

주민세	균등할	소득할
「 <u>균등할</u> 」 이 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「 <u>균등할만</u> 」 이 과세	과세	비과세
「 <u>소득할</u> 」 이 과세	과세	과세

### ◆ 『주민세 「소득할」 이 비과세』란 ?

주민세 「소득할」 이 과세되지 않은 (비과세) 것을 말하며, 『「균등할」 이 비과세』 또는 『「균등할만」 이 과세』 되는 양쪽 모두를 말합니다.

# 【참고】 세대종류별 수입 수준

이 표는 세대종류별 대략적인 수입 기준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부금의 종류를 표시한 것입니다.  
**부양 중인 친족의 유무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급부금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과세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.**

세대 유형		본인 + 부양가족 (명수)	급부금의 종류	
			주민세 비과세 세대 (1 세대당 7만엔)	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 (1 세대당 10만엔)
급 여 수 입	【단신 세대】 세대주 : 40대	1	~ 100만엔 정도	~ 115만엔 정도
	【3명 세대】 세대주 : 50대 배우자 : 50대 (배우자 공제를 적용) 자녀 : 대학생 1명	3	~ 205만엔 정도	~ 235만엔 정도
	【4명 세대】 세대주 : 30대 배우자 : 30대 (배우자 공제를 적용) 자녀 : 초등학생 2명	4	~ 255만엔 정도	~ 270만엔 정도
연 금 수 입	【단신 세대】 세대주 : 65세 이상의 고령자	1	~ 155만엔 정도	~ 160만엔 정도
	【2명 세대】 세대주 : 70대 배우자 : 70대 (배우자 공제를 적용)	2	~ 210만엔 정도	~ 220만엔 정도

## ◆과세 상황 확인 방법

- ① 시민세 · 현민세 특별징수세액의 결정 · 변경 통지서 ※1
- ② 시민세 · 현민세 납세 통지서 ※1
- ③ 각 구 과세과 ※2 (2023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)

※1 각 통지서를 보는 법은, 별지 「과세 상황 확인 방법」 을 참고해 주십시오.  
 ※2 전화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.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.  
 또한 답변 가능한 과세 정보는 창구로 오신 분 본인만 가능합니다.